

전주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307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한지영

피고A

변론 종결2023. 6. 20.

판결 선고2023. 7.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1. 10. 1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2021. 10. 18. 접수 제983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6. 2. 19.경 B과 사이에, B이 아래 표의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원고가 그 대출금반환을 담보하는 의미로 보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은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2016. 2. 19.	255,000,000	2018. 2. 19.(2022. 2. 18.로 연장)	C은행1) 이하 은행은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2	2019. 2. 19.	42,500,000	2017. 2. 17.(2022. 2. 10.로 연장)	C은행
3	2021. 9. 14.	19,000,000	2026. 9. 14.	중소기업은행

2)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B이 대출은행에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B을 대위하여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한 변제금과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위 약정에 의하면 B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B은 원고로부터 통지나 최고를 받지 않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 전액을 원고가 보증채무를 실제 이행하기 전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 1) C은행은 2016. 2. 25. 300,000,000원, 50,000,000원을 B에게 대출하여 주었고, 중소기업은행은 2021. 9. 14. 20,000,000원을 B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 2) B은 대출은행에 대하여 이자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C은행은 2021. 10. 26., 중소기업은행은 2021. 11. 23. 원고에게 B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을 구하였다.

3) 원고는 2022. 2. 23. C은행에게 위<표> 제1항 기재 보증채무금 259,546,754원, 위 <표> 제2항 기재 보증채무금 43,257,792원, 중소기업은행에게 위 <표> 제3항 기재 보증채무금 19,211,3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로

B는 2021. 10.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8. 전주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98368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B의 자력 여부

B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이후로 1개월 남짓 지난 2021. 11. 19. 전주지방법원에 회생신청(전주지방법원 2021회단1029호)을 하였는데, 회생신청서에 기재된 B의 재산상황은 다음과 같다.

금융자산	11,337,433	D은행	292,791,977
보험	72,505	피고	80,000,000
매출채권	294,796,252	E은행	900,000,000
주식	760,000,000	F	120,000,000
부동산	1,141,531,443	D은행	13,293,000
기계장치	146,867,213	중소기업은행	67,359,865
임대보증금	30,000,000	G카드	47,445,519
공구 및 비품	1,928,733	C은행	522,516,379
특허권	1,002,000	H카드	4,965,000
자동차	7,450,170	I카드	9,939,386
		J카드	21,823,934
		K은행	535,539,93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00,000,000
		L	100,000,000
		M	6,214,000
		N	42,323,300
		O	5,068,120
		P	3,882,614

금융자산	11,337,433	D은행	292,791,977
		Q	6,075,850
		R	27,653,780
		한국전력공사	1,005,380
		세무사 S 사무소	5,500,000
		T	67,400,000
		조세, 벌금	4,272,290
--- 합계 ---	2,394,985,749	--- 합계 ---	3,185,070,3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며칠 후 2021. 10. 26. C은행이 원고에게 이자연체 등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던 점, ③ B의 재정상태 악화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B에게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결국 원고가 2022. 2. 23. C은행에게, 2022. 3. 3.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는 B에 대하여 322,015,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는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만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다. 사해의사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이상 B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주장 피고는 B의 진정한 채권자로 선의이다.
-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피담보채권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의 선의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 즉,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김경선

별지

1) 이하 은행은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